

대통령령 제 호

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

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 중 “법 제62조”를 “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8조”로 한다.

제42조 중 “법 제61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”을 “법 제61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45조 및 제46조, 제49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61조의2 및 제6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.

제6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62조의3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.

별표 1의7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별표 4 제1호 중 “법 제9조제4항, 제11조제4항, 제26조, 제73조의2제1항, 제73조의5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”을 “법 제9조제4항, 제11조제4항, 제26조”로 한다.

별표 4 제3호 중 “법 제18조제2항·제66조제4항 또는 제66조의2제3항”을 “법 제18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별표 4 제5호 중 “법 제61조제2항 또는 제62조제2항”를 “법 제61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별표 4 제6호부터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, 제12호를 제6호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 ① (생 략) ②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(생 략) 2. 태양광 설비 외의 설비(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는 2017년 2월 28일까지 <u>법 제62조제1항</u>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설치공사·변경공사의 공사계획의 인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)를 설치한 자가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의 연간 총생산량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③ ~ ⑦ (생 략)	제19조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 「전기 안전관리법」 제8조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③ ~ ⑦ (현행과 같음)
제42조(공사계획의 인가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<u>법 제61조제1항</u> 및 <u>제62조제1항</u> 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해	제42조(공사계획의 인가) ----- ----- <u>법 제61조제1항</u> ----- ----- -----

당 계획이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가하여야 한다.	----- ----- -----.
제42조의2(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 전점검을 하는 전기설비) ① ~ ② (생략)	<삭제>
제42조의3(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) ① ~ ④ (생략)	<삭제>
제42조의4(응급조치의 대상 등) ① ~ ② (생략)	<삭제>
제45조(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) ① ~ ⑤ (생략)	<삭제>
제46조(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) ① ~ ② (생략)	<삭제>
제49조(안전공사의 운영재원) ① ~ ② (생략)	<삭제>
제61조의2(전기사고의 원인·경위 등에 관한 조사대상) (생략)	<삭제>
제61조의3(전기재해통계의 작성 및 관리) ① ~ ② (생략)	<삭제>
제62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	제62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--- ----- ----- -----

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위임한다. 1. ~ 3. (생략) 4. <u>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 신고의 접수(제2항제1호에 따라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는 제외한다)</u> 5. (생략) ② <u>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안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.</u> 1. <u>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대한 신고의 접수</u> 2. <u>전기설비 또는 전기통신선로설비(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)에 관한 법 제71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</u>	----- -----.. 1. ~ 3. (생략) <u><삭제></u> 5.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
--	--

③ <u>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 공사에 위탁한다.</u> 1. <u>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자가 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</u> 2. <u>법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</u> 3. <u>법 제64조에 따른 전기설비 임시사용의 허용</u> 4. <u>법 제65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</u>	<u><삭 제></u>
④ <u>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법 제9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전력기술관리법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단체에 위탁한다.</u> 1. <u>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 관리교육</u> 2. <u>법 제73조의5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</u>	<u><삭 제></u>

<u>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변경등록(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)</u> ⑤ ~ ⑥ (생략)	⑤ ~ ⑥ (현행과 같음)
제62조의3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~ ③ (생략) ④ <u>안전공사는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</u> ⑤ (생략) ⑥ 「<u>전력기술관리법</u>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 기술인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단체는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및 해임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	제62조의3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⑤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

<u>있다.</u>	
------------	--

신 · 구조문대비표(별표)

[별표 1의7]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요건(제45조제1항 관련) (생략)	<삭제>
[별표 2]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요건(제45조제3항 관련) (생략)	<삭제>
[별표 3]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(제45조제5항 관련) (생략)	<삭제>
[별표 4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63조제1항 관련)	[별표 4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63조제1항 관련)

위반행위	근거법령	과태료 금액
1. 법 제9조제4항, 제11조제4항, 제26조, 제73조의2제1항, 제73조의5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	법 제 108조 제 2 항 제1호	80만원
2. 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급약관을 갖춰 두지 않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않은 경우	법 제 108조 제 2 항 제2호	50만원
3. 법 제18조제2항·제66조제4항 또는 제66조의2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록을 한 경우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 108조 제 2 항 제3호	50만원
4.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장부·서	법 제 108조	200만원

위반행위	근거법령	과태료 금액
1. 법 제9조제4항, 제11조제4항, 제26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	법 제 108조 제 2 항 제1호	80만원
2. 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급약관을 갖춰 두지 않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않은 경우	법 제 108조 제 2 항 제2호	50만원
3.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록을 한 경우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 108조 제 2 항 제3호	50만원
4.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장부·서	법 제 108조	200만원

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제 1 항 제1호		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제 1 항 제1호	
4의2.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	법 제 108 조 제 1 항 제2호	200 만원	4의2.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	법 제 108 조 제 1 항 제2호	200 만원
5. 법 제61조제2항 또는 제6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경우	법 제 108 조 제 2 항 제4호	80만 원	5. 법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경우	법 제 108 조 제 2 항 제4호	80만 원
6.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검(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 용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은 제외한다)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 108 조 제 2 항 제5호	80만 원	<삭 제>	<삭 제>	< 삭 제>
7.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, 안전공사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 108 조 제 1 항 제3호	200 만원	<삭 제>	<삭 제>	< 삭 제>
8. 법 제71조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내린 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 108 조 제 1 항 제4호	200 만원	<삭 제>	<삭 제>	< 삭 제>
8의2. 법 제73조의3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	법 제108 조제1항 제4호의 2	200 만원	<삭 제>	<삭 제>	< 삭 제>
9. 법 제73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 108 조 제 2 항 제6호	50만 원	<삭 제>	<삭 제>	< 삭 제>
10. 법 제73조의8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, 장부·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 108 조 제 1 항 제5호	200 만원	<삭 제>	<삭 제>	< 삭 제>
11. 법 제81조를 위반하여 한국 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 108 조 제 1 항 제6호	200 만원	<삭 제>	<삭 제>	< 삭 제>
12. 법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 108 조 제 1 항 제7호	200 만원	6. 법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 108 조 제 1 항 제7호	200 만원